

	<h1 style="margin: 0;">장학 규칙</h1>		규정번호	3-4-2
			제정일자	1984.12.29
			개정일자	2019.03.01
			개정번호	Ver.31
			총페이지	1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56조에 의거하여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삭제 <2001. 9. 1>

제3조(장학대상) ① 장학금 수혜대상 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과 장학금 지원으로 개인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

② 경제적 사정 곤란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대상 학생은 해당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 0분위에서 8분위까지 산정 받은 학생으로 정의한다. <개정 2019.03.01.>

제4조(장학금 지급액 및 인원) 교내 각종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 인원은 매 학기 학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5조(특별장학금) 제12조(장학금 종류) 이외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장학금신청 기간은 매 학기 개시전으로 한다. 신청기간을 별도로 공고하는 장학금의 경우 그 기간 내 신청자에 한한다.

② 장학금 신청 구비서류는 장학생신청 및 추천서[별첨1],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로 한다.

③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학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학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다.

④ (삭제)

제7조(신청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사유발생 후 한 학기를 경과하기 전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삭제 <2015. 3. 1>

2. 학사경고 및 징계(유기정학 이상)를 받았던 자

3. 기타 학칙 위반자

제8조(추천의뢰 통보) 교학처에서는 장학금 배정종목과 장학금액, 배정인원을 해당 학부(과) 및 부서에 통보하여 추천의뢰를 요청한다.

제9조(추천기준) 삭제

제10조(장학생 확정) 학생위원회는 각 학부(과) 및 부서로부터 추천받은 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성적 및 장학금지급 대상자격 여부 등을 심의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발표한다.

제11조(장학금 지급 및 제한) ① 장학금은 등록금(입학금 포함)에서 감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금 지급대상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대상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2조 제2항 23호, 24호 장학금 지급은 수업연한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장학금

제12조(장학금 종류)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교내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적우수장학금
2. 봉사장학금 (학생회, 대의원회 등)
3. 보훈장학금
4. 동직자장학금
5. 근로장학금
6. 협약장학금
7. 미래장학금
8. 한가족장학금
9. 북한이탈주민장학금
10. 공로장학금
11. 기관재직자장학금
12. 디딤돌장학금
13. 홍보도우미장학금
14. 국내외연수지원장학금
15. 해외인턴쉽장학금
16. 어학우수자장학금
17. 전공심화과정장학금
18. 다문화가족장학금
19. 산업체위탁생장학금
20. 튜터링장학금
21. 자비유학생장학금

- 22. 마일리지장학금
- 23. 월드스타장학금
- 24. 전체수석장학금
- 25. 학과수석장학금
- 26. 아카데미스타장학금
- 27. 터닝스타장학금
- 28. 성적향상장학금<개정 2016.09.01.>

③ 교외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한국장학재단장학금
- 2. 한국지도자 육성재단장학금
- 3. 육·해군 전문대장학금
- 4. 운봉장학금
- 5. 충동창회장학금
- 6. 노엽장학금
- 7. 하림장학금
- 8. 본술장학금
- 9. 산학협동장학금
- 10. 하이서울장학금

④ 교내·외 장학금 종류 및 명칭은 교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교내장학금) 교내장학금 대상자 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단, 장학금은 학점포기 이전 성적으로 한다.

- 1. 성적우수장학금 : 학과별 학업성적이 우수한 재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단, 직전학기 성적이 나온 경우에는 휴학생에게 성적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봉사장학금 : 학생자치기구 임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이 3.0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 3.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자녀로서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이상인 자를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입학금포함)을 면제한다.
- 4. 동직자장학금 : 본 대학에 재직하는 교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자녀는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을 면제하며, 교직원이 정년(명예)퇴직을 하거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도 퇴직당시 재학 중인 자녀에게는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고, 정년(명예)퇴직한 자녀가 본 대학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등록금(입학금포함)의 1/2를 면제한다. 단,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2.0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 5. 근로장학금 : 가. 근로장학금 1유형은 경제적 사정 곤란자를 선발하여 일정기간 봉사를 부과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이 2.0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근로장학금 1유형은 일반근로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대응)으로 구분한다.
나. 근로장학금 2유형은 근로장학금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을 선발하여 봉사를 부과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2.0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9.03.01.>

6. 협약장학금 : 별도 협약에 의해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기관 또는 업체 학생에게 수업료의 30/10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직전 학기 성적 2.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7. 미래장학금 : 경제적 사정 곤란자에 해당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8. 한가족장학금 : 부모, 형제자매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수업료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직전 학기 성적이 2.0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9. 북한이탈주민장학금 : 북한이탈주민 및 그 직계자녀로서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이상인 자를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입학금포함)을 면제한다.
10. 공로장학금 : 대외행사나 공모전, 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하여 본 대학의 명예를 높인 단체나 개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1. 기관재직자장학금 : 군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인 학생에게 수업료의 30/10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이 2.0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12. 디딤돌장학금 : 장애등급 4급 이상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이 2.0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13. 홍보도우미장학금 : 대학 홍보 및 행사 등에 참여하여 지원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14. 국내외연수지원장학금 : 국내외 연수 선발시험에 통과한 학생에게 연수에 필요한 교육비 및 체재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직전 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15. 해외인턴십장학금 : 정부에서 시행하는 해외 인턴쉽에 선발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6. 어학우수자장학금 : 국제공인 외국어 성적(영어, 중국어, 일어)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7. 전공심화과정장학금 : 신입생은 전문학사 성적이 평균 2.5이상인 자, 재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2.5이상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03.01>
18. 다문화가족장학금 : 부모 중 1명 이상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 중 1명 이상이 귀화한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직전학기 평균 평점 2.0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19. 산업체위탁생장학금 : 산업체위탁과정 신입생에게 입학 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 튜터링장학금 : 교내에서 실시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3인 이상의 튜티에게 학습 지도를 시행한 튜터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1. 자비유학생장학금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1.5이상인 자비유학생에게 수업료의 30/10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2. 마일리지장학금 : 학생활동을 마일리지 포인트로 적립하여 해당 점수에 따라 일정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3. 월드스타장학금 :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수능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월드스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재학 중 직전 학기 성적이 3.5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 24. 전체수석장학금 : 정원내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신입생 중 최고 성적인 신입생에게 입학금 및 전학년 수업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재학 중 직전 학기 성적이 상위 30% 이내인 학생으로 한다.
- 25. 학과수석장학금 : 정원내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신입생 중 모집단위별 최고 성적인 신입생에게 입학학기 수업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 26. 아카데미스타장학금 : 정원내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신입생 중 학과별 지원인원이 가장 많은 고교에서 최고성적인 신입생에게 입학학기 수업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 27. 터닝스타장학금 : 정원 외 전문대학 이상학력자 전형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상위 20% 이내인 신입생에게 입학학기 수업료의 50%를 지급할 수 있다.
- 28. 성적향상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이 2.0이하인 학생이 해당학기 3.5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9.01.>

제14조(신입생 특별장학금) 삭제

제15조(교외장학금) ① 해당 학부(과)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교외장학생 수의 학부(과)별 비율을 참작하여 배정한다.

② 외부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③ 삭제

제16조(지급중지 및 회수)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 학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다.

- 1. 학칙 제56조 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자
- 2.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학생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 자격을 박탈하였을 때
- 3. 장학금 수혜자가 장학금 수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4.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이중수혜 금지) 삭제

제17조의 2 ①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을 더해서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개정 2019.03.01>

- 1. 근로장학금
- 2. 튜터링장학금
- 3. 국내외연수지원장학금
- 4. 공로장학금
- 5. 기타 한국장학재단 대학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 6. 홍보도우미장학금
- 7. 마일리지장학금
- 8. 봉사장학금

③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게 장학금이 중복해서 지급될 경우 장학금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한다.

제18조(동점자 처리) 성적장학생의 성적이 동점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신청학점
2. 평점합계
3. 이수학점이 높은 순
4. 전공과목 평점합계가 높은 순(전공필수, 전공선택 순)
5. 상기 1~4호가 모두 동일시 해당 순위의 장학금을 합산하여 균등 배분할 수 있다. 단, 신입생 전체수석장학금, 학과수석장학금, 아카데미스타장학금, 터닝스타장학금의 경우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심의) 장학금 지급 및 배정, 장학금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등은 학생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7.09.01.>

부 칙

- (1)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 이를 시행한다.
- (2) 본 규정의 개,폐는 학생부처장의 제청에 의거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3) (시행일) 본 규정의 개정안은 198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2)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 (3) (시행일) 본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2학년도 제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07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09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12년 3월 1일 이전에 선지급한 2012학년도 1학기 장학금은 개정 규칙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1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18년 04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장학생 신청 및 추천서

¹ 해당 년도	년 학기	⁶ 장학생 구분											
² 소 속	부(과)		전공	학년									
³ 학 번			⁷ 근 무 부 서										
⁴ 성 명			⁸ 근 무 기 간	(주간, 야간) (6, 4)개월 근무									
⁵ 주 소	휴대폰 :		자택전화 :										
⁹ 성 적	학년도	학년	학기	평점 :									
¹⁰ 장학금 수령 계좌번호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¹¹ 상기와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width: 100%;">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width: 100%;"> 신청자 : 인(서명) </div>													
¹² 추천자 소견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width: 100%;">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width: 100%;"> 추천자 : 인(서명) </div>													
동양미래대학교총장 귀하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20%;">구 분</th> <th style="width:80%;">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사용목적</td> <td>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정보 제공</td> </tr> <tr> <td>개인정보 수집 항목</td> <td>소속, 전공, 학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성적,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등</td> </tr> <tr> <td>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td> <td>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이용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td> </tr> </tbody> </table>						구 분	내 용	사용목적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정보 제공	개인정보 수집 항목	소속, 전공, 학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성적,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이용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구 분	내 용												
사용목적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정보 제공												
개인정보 수집 항목	소속, 전공, 학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성적,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이용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상기 본인은 장학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해 학교에서 관계기관에 조회 의뢰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제3자제공)·조회에 동의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width: 100%;">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width: 100%;"> 동의자 : 인(서명) </div>													

※ 필히 뒷면을 참조하여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1. 해당 년도 : 장학금 신청 학기를 기재
- 2~5. 신청자 본인사항을 정확히 기재
6. 장학생 구분 : 보훈장학생, 미래장학생, 근로장학생등 장학생 명칭을 기재
7. 근무부서 : 근무할 부서명 기록(근로장학생만 기재)
8. 근무구분 : 주간 또는 야간 / 4개월 또는 6개월 근무를 선택하여 “○”표 할 것
※ 근로장학생만 기재
9. 성적확인 : 장학생 신청인의 바로 전학기 성적을 기재
10. 장학금 수령 계좌번호 기재
11. 신청한 날짜, 성명을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12. 추천인 소견 : 추천인 소견을 기재